

# 지적 재산권 환경정비 방안 세미나

**지**난 4월 18일「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환경 정비 방안」이라는 세미나가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연구계를 비롯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과 관련한 업체들이 대거 참석 지적재산권 환경 정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기반산업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정보를 상용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술적 대응방안으로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과 DOI·INDECS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각계의 전문 분야를 발표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망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발표자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방안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신각철 교수〉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베이스 개발에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기간의 이용실적 등 자료가 소요되는데 불구하고 경쟁업자의 부당경쟁(불법복제, 가격인하 등)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의 부정이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법적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라 보호할 것인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

고 있는데, 저작권법은 그 법리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만을 보호하며, 노력과 자본이 투자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는 적절치 못하다. 설사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예외적 규정을 설정한다 하여도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저속을 피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산업·경제·기술적 측면이 강조되고 전자기술·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육성할 필요가 크다.

1999년 제15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는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부분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손질을 거치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의규정의 명확화,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추출과 재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인정, 제작자의 성명표시권·공표권의 인정, 제작자의 권리제한 및 보호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

## 〈공공정보의 유형별 민간제공 방안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남영호 교수〉

공공정보의 민간상용화 활성화는 공공정보의 생산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폭넓은 정보활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낳는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가격책정 정책과 제공방식 및 지불방식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 가격책정 방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의 성격은 사업성 여부와 보편적 서비스 여부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차별적 가격책정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성이 있고 공공기관이 개별적 서비스를 하는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의 일부를 가격 산정 시 반영하여 정부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인 공공정보 민간제공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공공정보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철학과 영국과 같이 모든 공공정보의 소유는 국가이므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국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철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모든 공공정보를 정보유통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과하면서 제공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정보 욕구의 증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라고 본다. 향후 공공정보의 정보생산, 유통체제의 세입, 세출예산 방식의 재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

정부는 정보사회 진입을 촉발하기 위하여 각종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을 현실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소재 확인과 권리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의의는 매우 크다.

다만, 정보사회의 보조적인 전제로서, 그러나 필요 요건으로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은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저작권 정보를 전자도서관 등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한 요소로 반영하거나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정보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사업(전자상거래에 대비한 각종 표준 제정, 메타 데이터 구축, 권리관리정보 제정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들의 조언을 듣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DOI 및 INDECS의 역할 및 향후 전망 -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창열 교수>

DOI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식별자이다. DOI가 기존의 식별자에 비해 부각되고 있는 것은 DOI 자체가 유통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기존의 식별자와 상충되지 않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DOI는 메타데이터의 일종인 INDECS와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INDECS는 전통적인 메타데이터인 더블린 코어와 같은 자원 기술 원소를 가지고 있으나, 인간과 지적재산권 계약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결 요소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INDECS는 유럽에서, DOI는 미국에서 Initiative를 가지고 추진 중인 국제적인 활동으로 WIPO, NISO, W3C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으며, ISO와 연계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콘텐츠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DOI와 INDECS와 같은 보호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 문제 및 정책방향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이상진 서기관>

인터넷 환경하에서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등을 어떻게 전달하고 공유하며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매우 다른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종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면, 저작물의 창조와 배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저작물이나 콘텐츠의 일시적 또는 최종 복제물이 저작권법상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인터넷상에서의 검색에 의한 복제권·배포권의 침해여부,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및 기타 컴퓨터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와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의 복제권의 침해여부, 저작물성은 없으나 그 자료수집 및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여부, 링크와 프레이밍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 캐싱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 등에 관하여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기존의 저작권법 개념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의 본질을 감안한 새로운 입법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